

# 청년주거급여지원사업



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**수급가구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**

## 지원대상

신청자	나이	만 19세~30세
	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기준중위소득 46%이하 ※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미혼청년</li><li>•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※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</li></ul>
	분리거주예외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(구)와농촌(군)으로 분리거주 하는 경우</li><li>• 부모와 청년의 주거시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경우</li><li>•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·만성·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경우</li></ul>
	신청인	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관계인, 담당공무원

## 지원내용

- 지역별, 가구원수별,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- 지급일      매월20일에 청년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
## 지원절차

- 신청장소     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서류      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지참)  
-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/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
- 분리거주사실확인 증빙서류/최근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
- 신청 및 진행과정



- 문 의    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